

긴급복지지원제도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위기상황에 처한
국민을 지원하여 드립니다.

www.mw.go.kr / www.129.go.kr



보건복지부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

- 주소지의 시·군·구청
- 보건복지콜센터 : 국번없이 129(www.129.go.kr)

www.mw.go.kr / www.129.go.kr

긴급복지지원제도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위기상황에 처한
국민을 지원하여 드립니다.

help me!



보건복지부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긴급복지지원제도

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?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

소득, 재산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나요? (~ 2013.12.31까지 적용)

- **소득** 모든지원 최저생계비 150% 이하 (4인 가족기준 2,319,599원 이하)
- **재산** 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 이하
- **금융재산** 500만원 이하

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?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[위기사유]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등으로 주택·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● 단전 1개월 경과시
- 주소득자의 휴·폐업(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, 소규모 제조·도매업자), 실직(고용보험 미가입자 등)으로 생계유지 곤란
- 출소 후 생계곤란, 거소없는 경우(기초생활보장사업우선연계)
- 가족의 방임,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(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)

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여 드립니다!



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?

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종류 결정 (2종 이상 복합지원 가능)

종류	지원내용	지원금액	최대횟수	
금전·현물 지원	생계지원	●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04만원 (4인기준)	6회
	의료지원	●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300만원 이내 (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)	300만원 이내	2회
	주거지원	●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지원	57만원 (대도시, 4인기준)	12회
	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	● 사회복지시설입소, 이용에 필요한 비용	129만원 (4인기준)	6회
	교육지원	●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업료, 학용품비	초19만원, 중31만원, 고38만원 및 수업료·입학금	2회
	그밖의 지원	● 연료비지원(10월~3월) : 85천원 ● 해산비(50만원), 장제비(75만원), 전기요금지원(최대50만원) *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(소전류제한기부설 포함)		1회 (연료비 6회)
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	●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● 상담 등 기타지원		횟수 제한 없음	

사업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신청기관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시·군·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